안전은 권리입니다

중대재해처벌법
주요내용

(2021. 1. 26. 공포)

2021-교육혁신실-25

고용노동부

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

OPEN

CONTENT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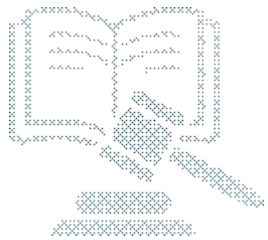

①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

②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

③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3대 안전수칙

안전은 권리입니다

1

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

중대재해란? [제2조(정의)]

"중대재해"란 "중대산업재해"와 "중대시민재해"를 말한다.

"중대산업재해"란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

❶ 사망자가 1명 이상

❷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

❸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인한 직업성질병자*가 1년 이내 3명 이상

*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

중대재해란? [제2조(정의)]

" **중대시민재해"란** 특정원료 또는 제조물,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, 제조, 설치,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 중

※ 다만,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

❶ 사망자가 1명 이상

❷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

❸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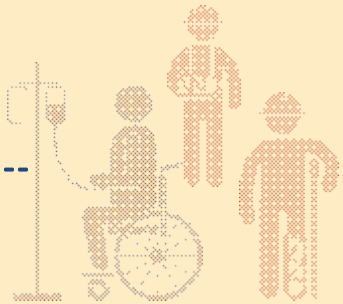

안전·보건 확보 의무 대상은? [제2조(정의)]

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"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"에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한다.

▶□ **사업주** :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,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

▶□ **경영 책임자 등*** :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

*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지방공기업, 공공기관의 장도 해당

어떤 안전 및 보건의무사항이 있을까? [제4조(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)]

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·운영·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·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❶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

❷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

❸ 중앙행정기관·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,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

❹ 안전·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

※ ❶·❹ 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

도급, 용역,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는?

[제5조(도급, 용역,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)]

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, 용역, 위탁 등을 행한 경우

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해야 한다.

※ 다만,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, 장비,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·운영·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.

처벌내용은? [제6조(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)]

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

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로 인해 **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**한 경우

→ **1년 이상의 징역** 또는 **10억원 이하의 벌금**

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,

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**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**한 경우

→ **7년 이하의 징역** 또는 **1억원 이하의 벌금**

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	• 사망자 발생한 경우 **'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'** • 부상 또는 질병 발생한 경우 : **'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'**

처벌내용은? [제7조(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)]

법인 또는 기관

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**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**한 경우 **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벌금형 부과** → **50억원 이하의 벌금**

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,

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**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**한 경우 → **10억원 이하의 벌금**

※ 다만, **법인 또는 기관이 안전 및 보건의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**

법인이나 기관

- 사망자 발생한 경우 : **50억원 이하의 벌금형**
- 부상 또는 질병 발생한 경우 **: 10억원 이하의 벌금형**

손해배상의 책임 [제15조(손해배상의 책임)]

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**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**

해당 사업주, 법인 또는 기관이 **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**을 진다.

※ 다만, **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**

적용범위와 시행시기는? [제3조(적용범위), 부칙 제1조(시행일)]

▶□ **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**(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공사)

: 2022. 1. 27 시행

▶□ **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**

(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)

: 2024. 1. 27 시행

※ 적용 제외 :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(개인사업주에 한정) 또는 경영책임자

1 |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(요약)

처벌 대상 및 내용

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

- 사망자 발생한 경우 : **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**
- 부상 또는 질병 발생한 경우 : **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**

법인이나 기관

- 사망자 발생한 경우 : **50억원 이하의 벌금형**
- 부상 또는 질병 발생한 경우 : **10억원 이하의 벌금형**

손해배상

-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, 손해액의 **5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**

적용범위

- 상시근로자 **5인 이상의 사업(사업장)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**

시행시기

- 상시근로자 50인 **이상** 사업장 : 공포 후 **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** (2022. 1. 27.)
- 상시근로자 50인 **미만** 사업장 : 공포 후 **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** (2024. 1. 27.)

2

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

2 |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

구 분	산업안전보건법	중대재해처벌법(중대산업재해)
의무주체	**사업주**(법인사업주+개인사업주)	**개인사업주, 경영책임자 등**
보호대상	**근로자, 수급인의 근로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**	**근로자, 노무제공자, 수급인,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**
적용범위	**전 사업장 적용** (다만, 안전보건관리체제는 50인 이상 적용)	**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** (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후 시행)
재해정의	▶ **중대재해 : 산업재해 중** ❶ 사망자 1명 이상 ❷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❸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* **산업재해 :**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**업무와 관계되는** 건설물, 설비 등에 의하거나 **작업 또는 업무로 인하여** 사망·부상·질병	▶ **중대산업재해 :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** ❶ 사망자 1명 이상 ❷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❸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

2 |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

구 분	산업안전보건법	중대재해처벌법(중대산업재해)
의무내용	▶ **사업주의 안전조치** ❶ 프레스·공작기계 등 위험기계나 폭발성 물질 등 위험물질 사용 시 ❷ 굴착·발파 등 위험한 작업 시 ❸ 추락하거나 붕괴할 우려가 있는 등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 시 ▶ **사업주의 보건조치** ❶ 유해가스나 병원체 등 위험물질 ❷ 신체에 부담을 주는 등 위험한 작업 ❸ 환기·청결 등 적정기준 유지 → **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**에서 구체적으로 규정(**680개 조문**)	▶ **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·보건 확보 의무** ❶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❷ 재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❸ 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❹ 안전·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→ ❶·❹ 의 구체적인 사항은 **대통령령**에 위임

2 |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

구 분	산업안전보건법	중대재해처벌법(중대산업재해)
처벌수준	▶ 자연인 **사망** **7년 이하 징역**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**안전·보건조치 위반**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▶ 법인 **사망** **10억원 이하** 벌금 **안전·보건조치 위반** 5천만원 이하 벌금	▶ 자연인 **사망** **1년 이상 징역**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(병과 가능) **부상·질병**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▶ 법인 **사망** **50억원 이하** 벌금 **부상·질병** 10억원 이하 벌금

안전은 권리입니다

3

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3대 안전수칙

추락위험 방지조치

1 추락위험장소에 안전난간 설치

2 개구부 덮개 및 경고표지 설치

3 추락방호망 설치

4 지붕 위 작업 시 작업발판 등 설치

5 달비계 작업 시 안전대 및 구명줄 설치

6 안전대 착용 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

3 |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3대 안전수칙

끼임위험 방지조치

1 원동기, 회전축 등에 덮개, 울 등 설치

2 정비, 보수작업 시 운전정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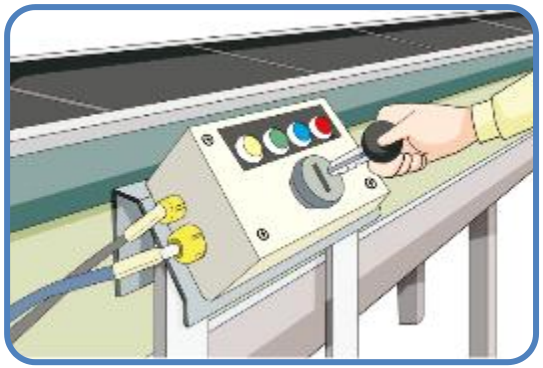

3 기동장치 잠금조치, 표지판 설치

필수 안전보호구 지급·착용, 상시점검

1 안전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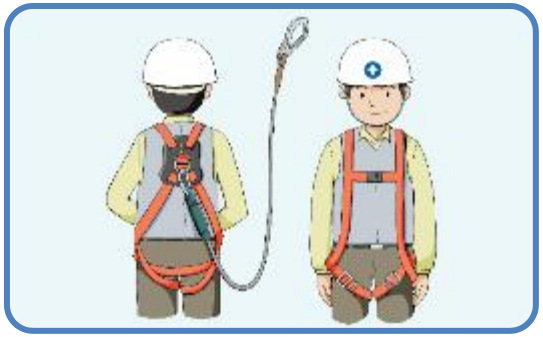

2 안전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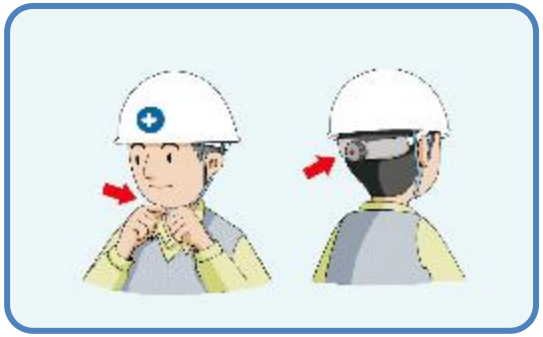

3 안전화
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(보호구 지급 등)에 따라 사업주는 해당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 지급·착용하도록 하여야 함

안전은 권리입니다

감사합니다

고용노동부

산업재해예방
안전보건공단